

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법 → 고의범 변경



(1) 개정안 요지

구분	조항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신설	제2조	"외국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함.
나. 판정 신청 근거 규정 추가	제9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등록관리 근거 규정 신설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수출심의 조건 부과 근거 추가	제1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심의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수출이행 금지를 명확히 규정함.
마. 해외인수합병 승인 규정 개선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시 승인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인에게도 의무부과, 심의시 조건 부과, 심사결과 전 이행금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바. 이행여부 점검 근거 신설	제11조의3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수리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이행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제13조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무단유출 및 유인 행위 침해행위 규정	제14조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자. 범죄 구성요건 변화	제36조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법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
차.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제39조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카. 이행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제40조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차금지,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기술유출, 영업비밀, 특허침해, 부정경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